

OECD 가입 29개 국가의 건축사제도 분석

Analysis of Registered Architects System of 29 OECD Members

본협회 건축연구소 제공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변화의 세기라고 정의되고 있는 20C 후반에서 21C를 맞이하기 위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는 시대적 영향 아래에서 건축계가 받고 있는 압력을 구체화해나가는 기초작업의 하나로 정의된다. 국제경제는 세계의 무역질서의 개편을 위해 발족한 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 체제하에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단위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건축사 상호인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취지는 전문인력 자원의 공유를 내세우고, 실익으로는 후진국가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도 이제는 방어만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또 이를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되면 존립의 기반마저 잃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내의 여건이 국제적 표준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정착되어 있어 상당한 부분에서 대폭적인 전환작업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으로 최근 일본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WTO 체제하에 주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 가입 29개 국가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건축사제도를 종합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의 건축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기초적 개념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건축사제도 중에서 자격에 관한 사항과 면허 및 등록의 제도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다. 즉 건축사면허를 최초로 부여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교육 및 실무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과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의 사용에 따른 면허 취득 및 등록상의 요구에 대한 조건을 정리하여 볼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간접 조사된 각종 자료의 내용에 한정하며,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 국가는 위의 NCARB 자료에서 발췌한 OECD 가입 29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대상 국가의 목록과 OECD 가입 연도를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3)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은 1990년 이후, 즉 90년대 '건축사' 지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사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모두 발췌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협회 내부의 기존 보고서 중 관련이 있는 성과물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등 이 연구의 자료조사는 모두 문헌을 통한 간접조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 NCARB¹⁾의 건축사 해외 실무지침서(Architect Overseas Practice Standards)는 협회 소장자료로 조사된 총 57개 국가들 중에서 OECD에 가입하고 있는 29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번역한 내용에서 이 연구의 주제인 건축사제도 및 조세제도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유형을 정리하여, 외국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료 조사 및 분석이 모두 문헌에 의한 간접연구로 이루어져 이 연구의 성과는 한계를 가질

1) 미국 건축사등록협회: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연구진행의 방향설정 등에 있어서는 협회활동중인 임원 및 연구심의위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를 입수²⁾ 활용하였다.

2. OECD 가입 29개 국가의 건축사제도

1) 자격(경력)제도

이 연구에서는 자격제도는 최초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및 경험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자격제도는 이러한 개념에서 교육제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를 다루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또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계의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분석자료인 NCARB 설문 내용에 나타난 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연계되는 실무 또는 견습과정 및 면허부여를 위한 시험제도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각각의 국가별로 정리하여 그 유형을 밝히는 것으로써 29개 국가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29개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한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I ~ V 인 5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각 유형별 해당 국가를 <표 2>에 정리하였다.

I 공인 교육기관의 건축학위 취득 후 건축 설계사무소 실무경력 또는 견습기간을 거쳐 면허시험 실시

II 공인 교육기관의 건축학위(실무가 교육과정 중에 포함) 취득 후 면허시험 없음

III 공인 교육기관의 건축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견습기간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시험은 없음

IV 자격제한 없음(교육 및 실무상의 요구사항 없음)

V 공인 교육기관의 수료 후(반드시는 아님) 교육기관의 등급에 따른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거쳐 면허시험 실시

위에서 정리한 5가지의 유형을 보다 실용화하

기 위해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교육과 경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준에 따르는 자격을 인정, 둘째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인정, 셋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건없이 능력을 평가하여(또는 아무 조건없이) 인정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의 제도 중에서 세 번째의 제도가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보완을 거쳐 국제적인 기준으로 정립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요약한 내용에 따른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Model 1은 교육의 정도에 따라 실무 연수기간의 요구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이고, Model 2는 교육의 성과를 모두 인정하거나 또는 실무의 경험에 보다 중요성을 두고서 반드시 정해진 일정기간의 실무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를 복합한 형태³⁾로 운영을 하고 있다. 즉 해당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와 내용의 평가에 따라 실무 연수기간에 차등을 두어 자격을 인정하거나, 견습과정 - Intern Development Program(이하: IDP) - 을 두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Model 3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학교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실무연수를 병행하고, 그 성과를 연수담당자로부터의 인정 여부로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실무연수를 교육과정과 통합하므로 인한 장점은 면허의 부여를 위한 자격심사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주로 검색한 Home Page는 AIA, NCARB, WTO, OECD 등의 인터넷 Site임.
3) NCARB의 Position Paper(해설서-본 내용을 추후 번역할 예정임)에 따르면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A.R.E.)의 지원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거나, IDP의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며, 실무 경험과 IDP 모두 700 단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요구하는 한 단위는 8시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별 업무 시간을 말한다.

<표 1> OECD 가입 29개 국가

국명	가입	국명	가입	국명	가입
Australia	1971	Hungary	1996	Norway	1961
Austria	1961	Iceland	1961	Poland	1996
Belgium	1961	Ireland	1961	Portugal	1961
Canada	1961	Italy	1961	Spain	1961
Czech Republic	1995	Japan	1964	Sweden	1961
Denmark	1961	Korea	1996	Switzerland	1961
Finland	1969	Luxemburg	1961	Turkey	1961
France	1961	Mexico	1994	United Kingdom	1961
Germany	1961	Netherlands	1961	United States	1961
Greece	1961	New Zealand	1973		

〈표 2〉 제도 유형별 해당국가

유형	해 당 국 가	비고
I	호주*(2), 오스트리아*(3), 캐나다(3), 체코슬로바키아(3), 이탈리아(0.5), 뉴질랜드*(2), 폴란드*(3/1), 미국(3)	
II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III	벨기에(2), 아이슬란드(2), 룩셈부르크(1),	
IV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V	헝가리(3-5), 일본(2-), 한국(5-14), 스위스	

- ☞ ()안의 숫자는 경력 요구 기간: 단위는 년
- 경력에 대한 인증을 위해 기술시험만 실시함.
- ※ 프랑스는 교육기간이 최소 5년임.
- ※ 독일은 교육과정 중에 견습근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건축사가 된 후에 등록을 위해 2년간의 실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함.
- ※ 멕시코와 터키는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이 분류에 부적절하여 제외함.
- ※ 네덜란드는 공인된 교육의 수료 후 면허를 바로 부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 폴란드는 경력에 대한 요구가 설계사무소에서 3년과 건설현장에서의 1년으로 구분되어 있음. 즉 최소 4년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함.
- ※ 사실상 면허시험제도가 있으나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종합대학이 있음.

2) 면허 및 등록제도

면허 및 등록제도에 대한 내용의 분석은 다음에 제시되는 다이어그램인 〈그림 1〉과 기본 관계를 구조화시킨 〈표 3〉~〈표 5〉를 기준으로 하여 29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격제도는 교육 과정을 마친 뒤 건축사로서 면허를 부여받거나 등록을 통해 공식적인 건축설계업 수행단계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관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건축사제도

면허 및 등록은 '건축사(Architect)' 직함의 사용 및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격 부여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 사용과의 관계 하에 면허 취득 및 등록 여부에 대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면허 요구
- ②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 ③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등록 요구
- ④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 ⑤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면허 요구
- ⑥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 ⑦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등록을 요구
- ⑧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이상 ①~④와 ⑤~⑧는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의 사용에 관계된 면허 및 등록에 대한 요구조건을 조합을 각 요소별로 정리한 것이며,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즉 이 표에서 건축사자격제도의 유형을 정리해 내는 방법은 건축설계업의 수행에서 (1), (2)와 (3), (4)에 해당하는 요소의 조합과 건축사 직함에서 동일하게 해당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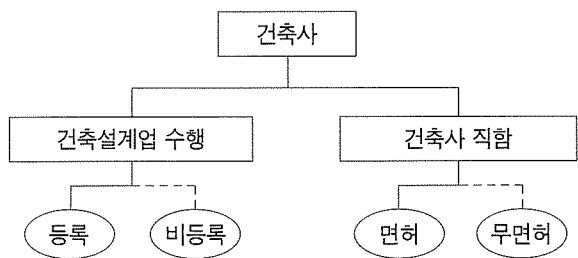
의 조합을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업의 수행과 건축사 직함의 사용을 위해 면허와 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는 (①③+⑤⑦)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능성이 있는 제도 유형의 모든 조합 경우 수는 16가지가 된다. 한번 더 정리하면 아무런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술된 유럽의 6개국은 (②④+⑥⑧)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건축사자격제도 유형을 해당 국가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우 분석을 위한 설문문의 내용상의 미완결성으로 인해 47가지 조합 요소 중 3가지 이상 나타나면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①③+⑤⑦)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페인, 미국(9개 국가)
- (①③+⑤⑧) - NA⁴⁾ -
- (①③+⑥⑦) 터키
- (①④+⑤⑦) 호주, 아이슬란드, 폴란드
- (①④+⑤⑧) - NA -
- (①④+⑥⑦)
- (①④+⑥⑧) - NA -
- (②③+⑤⑦)/(②③+⑤⑧) 네덜란드
- (②③+⑥⑦) 프랑스, 뉴질랜드

〈그림 1〉 건축사제도 구성도



〈표 3〉 건축설계업의 수행

	등 록	비 등 록
면 허	(1)	(2)
무면허	(3)	(4)

〈표 4〉 건축사 직함의 사용

	등 록	비 등 록
면 허	(1)	(2)
무면허	(3)	(4)

〈표 5〉 건축사제도 유형 요수

	(1)	(2)	(3)	(4)
건축설계업 수행	①	②	③	④
건축사 직함	⑤	⑥	⑦	⑧

※ 유형의 조합 예는 ①③+⑤⑦, ②④+⑥⑧ 등으로 구성된다.

4) NA : Not Applicable(자료가 유의하지 않음)

(㉓+㉔) - NA -

(㉔+㉕) 영국

(㉔+㉖) - NA -

(㉔+㉗)/(㉔+㉘)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6개 국가)

참고로 면허 및 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유형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는 NCARB라는 민간기구가 건축사면허의 부여 및 등록을 위한 시험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허의 부여와 등록이 하나의 과정으로 묶여 있다. 즉 "면허 = 직함(건축사) = 등록"의 관계가 성립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근거를 두고서 각 주별로 해당 NCARB 지부에서 운영하는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이하 : ARE)에 합격하게 되면, 면허의 부여와 동시에 건축사로 등록되는 형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건축설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설계 도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 건축허가 등의 공식 절차 - 정당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건축사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자격에도 유형 중 요소로서 ①을 포함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들로는 총 13개 국가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의 자격(경력)제도

2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실무경력 또는 견습기간은 1단계인 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축사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자격의 평가에 관계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교육의 통합적 운용과 마찬가지로 자격 평가를 위한 실무 또는 견습의 평가 기준 또한 업역의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 과제에서 살펴보게 될 NCARB의 기준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운영상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참고적으로 1998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안내서 상에 나타난 응시자격 및 경력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 : 졸업후 바로
- 전문대 졸업자 : 졸업후 2년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후 4년 실무경력
- 기타 : 9년 실무경력

위의 사항은 예비시험에 대한 것으로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응시자의 조건에 따라 바로 자격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또는 견습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경력인정기준

- 1등급(100% 인정)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6)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에 관한 연구경력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

• 2등급(80% 인정)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업체, 기관, 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토목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음)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건축관련 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 이상의 시간강사 경력을 포함한다.)

(5)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경력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

• 3등급(60% 인정)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써 건축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에서 보아 현행 우리나라의 경력인정에

5)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과 유사함

대한 기준은 단순히 인정 수준에 대한 등급과 어느 업체 또는 분야에 소속하여 근무하였는가만을 판단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후속 연구에서 검토하게 될 NCARB의 기준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세분된 항목별 시간단위에 대한 평가와 관련 분야 또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급 및 그 최대 인정 한계를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건축설계업에 종사한 전문인으로서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그 인정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에서 OECD 가입 28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국가의 제도를 크게 정리하면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정리한 I~Ⅵ의 6가지 유형은 2장에서 정리된 29개 국가의 자격(경력)제도와 면허 및 등록 제도에 대한 고찰내용을 근거로 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들 유형 각각에 대하여 내용과 기본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유형 I 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구조이다. 즉 면허와 등록의 개념이 이원화되어 있어 등록 건축사와 일반 소속 건축사 사이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 있지 못하다. 즉 소속 건축사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위해 개업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형 II 는 미국의 제도를 나타낸 것인데, 〈그

림 2〉에는 표현상의 이유로 등록 신청과 면허시험 및 취득이 나누어져 있으나 사실은 이 과정이 하나로 되어 있어 '등록 = 면허'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건축사로서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제도의 단순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안으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형 III 과 IV 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나타낸 것으로 교육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교육을 마친 자는 그것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축설계업의 수행을 위해서만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아예 협회에 가입을 조건부 또는 임의가입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이 유럽의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방식은 I 또는 II 의 유형 보다 좀더 종합화되고 단순한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상호 인정기준과 실무(견습)경력 관리에 대한 상호 인정기준만 마련되면 어렵지 않게 건축사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건축사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마도 1999년 UIA의 북경총회⁶⁾에서 그 향방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우리의 제도가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와 국제적 기준 제정의 추이를 관찰하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의 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UIA Home Page: 제20차 UIA 대회(북경 1999) 1999년 6월 23일에서 26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 주요 주제는 21세기의 건축이며, 부제는 건축과 전문직(Architecture and Professionalism); 건축과 환경(Architecture and Environment); 건축과 문화(Architecture and Culture); 건축과 기술(Architecture and Technology); 건축과 도시성(Architecture and Urbanism); 건축교육과 젊은 건축가(Architectural Education and Young Architects)의 6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부제별 토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항은 부록의 1999년 북경 UIA 대회 내용을 참조 (<http://www.uia-architects.org>)

〈그림 2〉 건축사제도의 유형

